



「2024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시험대비」

# 헌법 난이도별 모의고사 및 풀이(8)

| 박충신 교수 | 박문각 경찰 노량진학원



※ QR코드를 통해 "배우면 배울수록 신나는 헌법" 헌법 박충신 교수의 강의 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A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그런데 A 구치소장 을은 갑의 재판이 진행 중에 갑과 병 등 접견인들과의 접견(화상접견 포함) 내용을 녹음하여, 녹음파일 전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공하였다. 갑은 구치소 내에서 접견인들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수입 및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다시 기소되었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갑과 접견인들 사이의 수용자 접견현황 조화자료 및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은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에 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 또는 녹화에 관하여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4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① 이 사건 녹음조항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② 이 사건 녹음조항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
- ③ 이 사건 녹음조항은 개인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이므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된다.
- ④ 이 사건 녹음조항은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난이도 : 상 출제영역 : 기본권론  
[해설] 정답 : ②

② 미결수용자가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미결수용자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

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다. 이 사건 녹음조항은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하고 있을 뿐, 접견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 11. 24. 2014헌바401).

- ① 이 사건 녹음조항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이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시 그 대화내용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이 내밀한 대화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을 제한한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조항이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2016. 11. 24. 2014헌바401).
- ③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 3.부터 4차례에 걸쳐 화상접견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상접견을 하였고, 화상접견은 일반 접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청구인과 접견인 사이의 화상 접견내용도 모두 녹음·녹화되었는데, 이는 화상접견시스템이라는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이므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된다(헌재 2016. 11. 24. 2014헌바401).
- ④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고, 이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녹음조항은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헌재 2016. 11. 24. 2014헌바401).

## 20. 대학의 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학의 자율성 즉, 대학의 자치란 대학이 그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수를 외부의 간섭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학사·시설·재정 등의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교수활동의 담당자인 교수가 그 핵심주체라 할 것이나, 연구·교수활동의 범위를 좁게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학생, 직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 ②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나 교수, 학생선발·지도 등과 관련된 교무·학사행정의 영역에서는 대학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학교법인으로서도 설립 목적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조정적 개입은 가능하다.
- ③ 우리 법제상 학교법인에게만 관리능력이 인정되므로 각종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법적 분쟁의 해결, 그리고 대학의 재정, 시설 및 인사 등의 영역에서는 법인이 대학을 대표하게 될 것이고 대학 구성원에게는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 ④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육제도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입법자는 법률로써 교육제도를 구체화함에 있어 헌법 제31조 제4항이 명하고 있는 의무 즉,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난이도 : 상 출제영역 : 기본권론  
[해설] 정답 : ③

- ③ 우리 법제상 학교법인에게만 관리능력이 인정되므로 각종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법적 분쟁의 해결에는 법인이 대학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한편, 대학의 재정, 시설 및 인사 등의 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적인 윤곽을 결정하되, 대학구성원에게는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일정 정도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 ① 대학의 자율성 즉, 대학의 자치란 대학이 그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수를 외부의 간섭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학사·시설·재정 등의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교수활동의 담당자인 교수가 그 핵심주체라 할 것이나, 연구·교수활동의 범위를 좁게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학생, 직원 등도 포함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 ②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나 교수, 학생선발·지도 등과 관련된 교무·학사행정의 영역에서는 대학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학교법인으로서도 설립 목적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조정적 개입은 가능하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 ④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육제도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입법자는 법률로써 교육제도를 구체화함에 있어 헌법 제31조 제4항이 명하고 있는 의무 즉,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배우면 배울수록 신나는 헌법

# 헌법 박충신

[7개년 최다 빈출] 박충신 경찰 헌법 MUST 20 Theme 이론+기출 정리

4주 완성

개강 4월12일(금) 시간 금토 14:00~17:00  
교재 프린트 제공.

2024 박충신 경찰 헌법 이론

8주 완성

개강 3월15일(금) 시간 금토 09:00~13:00  
교재 박충신 경찰 헌법

3-4월 강의